

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상정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과장 이 도 극)

가. 제안이유

-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일부개정(법률 제9276호, 2008. 12. 29. 공포·2009. 6. 30. 시행)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,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 (법률 제9758호, 2009. 6. 9. 공포·2009. 12. 10. 시행)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에 따른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(안 조례 제명, 제1조 및 제2조)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 정비(제2조 제2호)
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 → 제126조
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
 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2호 → 제63조제2호
 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3호 → 제63조제3호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- 특이사항 없음	-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“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”를 “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한국농촌공사”를 “한국농어촌공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.

1. “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”(이하 “기반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수리계”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.

제6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2호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2호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3호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」 제63조제3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55호
의결 년월일	2010. 3. 19 (제159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2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276호, 2008. 12. 29. 공포·2009. 6. 30. 시행)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,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 (법률 제 9758호, 2009. 6. 9. 공포·2009. 12. 10. 시행)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,
-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 함(안 조례 제명,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 함(안 제2조제2호).
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 → 제126조
- 다.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 함

(안 제6조 및 제8조).

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2호 → 제63조제2호
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3호 → 제63조제3호

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“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”를 “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한국농촌공사”를 “한국농어촌공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”(이하 “기반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수리계”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.

제6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2호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2호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3호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3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	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한국농촌공사</u>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정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”(이하 “기반시설”이라 한다)란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리계”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.</p> <p>3. “구역”이란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한국농어촌공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”(이하 “기반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리계”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.</p> <p>3.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경비의 부과·징수) 수리계는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경비의 부과·징수) ----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2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수리계의 해산) ① 수리계는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3호에서 정하는 해산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. ②~③ (생략)</p>	<p>제8조(수리계의 해산) ① 수리계는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3호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